

2025년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지역 소공인의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상품개선·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화성상공회의소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소공인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시제품 개발 지원

다. 사업기간 : 2025. 4월 ~ 10월

라. 사업내용 : 소공인 시제품 개발 제작을 위한 재료비 및 외주비 등 지원

지원항목	주요내용
디자인 및 설계비용	시제품 개발 시 외주 업체에 디자인 및 설계비용 등
원자재 구입비용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비용 등
위탁 외주 가공비용	시제품 개발 시 일부 부품을 외주 업체에 위탁 수행하는 실제 경비 등
금형 제작비용	시제품 개발 시 설계를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3D프린터, 목업, 금형제작) 등
시험·분석, 장비임대 비용	시제품 개발 시 시험분석 지원 및 장비 임대비용 등
기타 비용	위의 열거되지 않은 항목 중 특화지원센터에 사전 승인을 득한 비용

※ 사업 수행 완료 후, 업체 방문을 통한 금형 및 외주 가공비용 등을 최종 검수 후 사업 불이행 및 제안한 내용과 상이할 시, 사업 금액 전부를 수혜 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2. 세부 내용 세부내용

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24개사
- 지원대상 : C22,C24~C31업종 10인 미만 소공인(일부지역 제외)

산업분류 코드	주요업종	산업분류 코드	주요업종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8	전기 장비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5	금속가공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동탄 1~8동, 병점동,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지역 제외

○ 지원방법

-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업체당 최대 500만원)
- 공급가액 기준 500만원 한도 지원
- ※ 공급가액 초과금 + 부가세는 소공인 자부담

○ 모집기간 : 4월 1일(화) ~ 4월 15일(화)

※ 모집 미달되는 경우, 모집기한 연장 가능

○ 지원업체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
- (정성평가)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제안서 발표(PT형식, 업체당 10분 발표)
- * (집적지 특성화 지원) 추진계획서 내 화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 또는 화성시 메이커스페이스의 장비 이용한 개발 방안 필수 포함

○ 지원업체 선정 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기업 통보

※ 선정평가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나. 지원 절차

①사업신청 (소공인 → 센터)	②선정통보 (센터 → 소공인)	③협약 (센터 ↔ 소공인)	④사업수행 (공급업체 ↔ 소공인)	⑤중간점검 (소공인 → 센터)	⑥지원금 신청 (소공인→ 센터)	⑦현장실사 (센터 → 소공인)	⑧지원금 지급 (센터→ 공급업체)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발표평가 소공인 선정	협약서 제출	시제품 개발 제작 진행	중간 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서, 완료보고서 등	시제품 제작 과정 확인, 만족도 조사	최대 500지원 (공급가액) 공급 업체 로 지급

다. 세부 추진 절차

절차	업무	세부내용
①	사업 신청	- (소공인) 신청서, 추진계획서 등 서류 준비·작성하여 제출 - (센터)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심사위원 구성
②	선정 통보	- (센터) 심사평가 및 발표평가로 지원 소공인 선정 - (센터→소공인) 선정 소공인 대상 지원금 신청 관련 개별 안내
③	협약	- (센터→소공인) 협약을 작성하여 제출
④	사업 수행	- (공급업체↔소공인) 기한 내 시제품 개발 제작 진행
⑤	중간 점검	- (소공인→센터) 중간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⑥	지원금 신청	- (소공인→센터) 지원금 지급 신청서, 완료보고서 등 서류 준비 및 작성하여 제출
⑦	현장실사	- (센터→소공인) 시제품 제작 과정 확인 · 견적서 상의 품목과 동일 여부 확인 · 사업장의 적합한 품목인지 적합성 검토 실시
⑧	지원금 지급	- (센터→공급업체) · 공급가액 기준 500만원 한도 지원

※ 세부 추진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임금체불 업체는 지원 불가
- 사업 선정통보 후 기한 내 제작·설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선정통보 이전에
선 진행한 제작·설치건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사전 변경 승인 없이 공급업체를 변경 및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
- 품목 부적격 등 센터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존 지원 사업 수혜의 경우 지원 불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해당사업 지원 전 센터 사업에 공급업체로 참여한 업체는 지원 불가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마. 지원 유의사항

- 지원 신청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 내용 변경, 공급업체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함
 - 사전 센터 협의 없이 지원 포기의 경우 이후 2년간 센터의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공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공급업체는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서 소공인이 직접 복수견적을 받아 가격이 낮은 업체를 선정
 - 당해 센터사업(교육, 마케팅, 컨설팅, 자율사업) 수혜업체는 공급업체로 선정 불가하며, 당해 공급업체 또한 센터 사업에 참여 불가
 - 신청서 견적품목과 관련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함
 - 신청업체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공급업체 선정 불가
 - 납품 관련 이견 사항은 소공인과 공급업체간 해결해야 함
 - 공급업체에 지원금 입금 시점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시켜야 함
- **견적서(비교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견적서(비교 견적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함

구분	필수항목	필수기재사항
1	견적일	사업모집기간 내
2	공급받는자	사업신청 업체명
3	공급하는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날인
4	견적내용	품목, 규격 및 사양,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 원견적서와 비교 견적서에 **동일한** 품목, 규격, 사양 기입 상호 **가격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제출**

○ 기업당 사업지원 상한에 관한 사항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및 화성시 시설(센터) 운영 및 자율 사업 지원기준(안)에 따름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중 당해 연도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구분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시
지원한도	5백만원	5백만원
해당사업	카탈로그 제작 지원, 공동 국내박람회 참가 지원, 공동연구회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브랜드 이미지 제작 지원,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홈페이지 제작 지원, 스마트 제조 도약 지원, 국내외 인증 지원, ESG경영 친환경 제조환경 구축 지원, 시제품 개발 지원, 산업재해 예방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해당없음

- 단,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지원한도를 7백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개별 기업의 누적 지원금액 등을 감안하여야 함

3. 신청 안내

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접수 (hsmfsc@gmail.com)

나. 신청 기간 : 4월 1일(화) ~ 4월 15일(화)

다. 신청 서류

1)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서식1] 사업 신청서 1부
②	<공통1> 개인정보 제공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1부
③	<공통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④	<공통3>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명시 必]
⑤	<공통4>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공통5> 부가세과세표준증명(23년~24년) 1부
⑦	<공통6> 주업종명(업종코드) 조회 화면 인쇄본(서명날인 必) 1부 [국세청 홈택스]
⑧	<공통7>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부
⑨	<공통8>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⑩	[서식2] 추진계획서 1부
⑪	[서식3] 협약서 1부
⑫	[서식4] 지원 사업 대상 선정 평가 기준표 1부

2) 선정 승인 이후 제출서류 (※모든 일정은 선정 이후 통보)

제출서류	
①	[붙임3-1], [붙임3-2] 협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②	[붙임4-1] 중간 보고서
③	[붙임4-2] 완료 보고서(제작 과정 사진 첨부)
④	[붙임4-3]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1부
⑤	[붙임5]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⑥	공급업체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각 1부
⑦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⑧	공급업체 통장사본 각 1부
⑨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⑩	자부담 송금 확인증 각 1부(부가세 + 지원금 초과 금액)

4. 접수 및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F.A.X.	E-mail
박현미 매니저	031-354-3641	031-354-3642	hsmfsc@gmail.com